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비알테크(주)(박인식) ② (주)지오테크(채경석)

나. 전화번호 : ① 031-532-8131 ② 031-879-3491

2. 명칭 :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AT&T 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관로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보강튜브를 공기압으로 반전하거나 원치로 견인하여 삽입하고 공기압으로 밀착시킨 후 스팀열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양생시키는 과정에서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고 응축수와 함께 회수·승온·순환시킬 수 있는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양생함으로써 미경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AT&T : Air Turning & heat Transfer)이다.

<범위>

보강튜브의 경화양생시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고 응축수와 함께 회수·승온·순환시킬 수 있는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D200mm~ D1,500mm)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덴버코리아이앤씨(주), ② (주)동성엔지니어링, ③ 주식회사 건일, ④ 주식회사 비테크

나. 전화번호 : ① 032-322-8977, ② 02-2041-8717, ③ 031-736-6312, ④ 055-343-7220

2. 명칭 :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품질관리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주입 재료의 배합 및 배출을 자동화한 배합시스템과 지반 반발압에 따라 구동 조절이 가능한 다중 동시 주입펌프로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측된 시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범위>

주입 재료의 배합 및 배출 자동화, 펌프구동 조절, 주입 제 요소의 예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현장 품질관리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시켜 외부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42호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하며,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1조, 제19조, 제35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